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도권·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지방의 사회·경제적 발전정도,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등을 마련하여 지방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부의 지방우대 지원 등 근거 마련(안 제44조의3제1항)

정부는 지역 간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 특성에 맞게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나. 정부의 지방우대 정책 지원을 위한 행안부장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마련 근거(안 제44조의3제2항)

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와의 거리, 사회·경제적 발전 정도,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우대의 근거가 되는 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지방우대지수와 관련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

다. 지방우대지수 관련 심의의결 절차 등 규정(안 제44조의3제3항)

지방우대지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필요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
라.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우대지수 등 반영 노력 의무 규정(안 제44조의3제4항)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하여 소관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,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9. 11. ~ 10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의3(지방우대 지원 등) ① 정부는 지역 간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 특성에 맞게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우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의 거리, 사회·경제적 발전 정도,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의 근거가 되는 지수(이하 “지방우대지수”라 한다)를 마련할 수 있으며, 지방우대지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우대지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며,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지방우대지수 등을 소

관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4조의3(지방우대 지원 등) ①</u> <u>정부는 지역 간 균형성장을 지</u> <u>원하기 위해 각종 정책이나 사</u> <u>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그 특성</u> <u>에 맞게 지방을 우대하여 지원</u> <u>할 수 있다.</u> 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</u> <u>따라 지방우대를 지원하기 위해</u> <u>서울특별시와의 거리, 사회·경</u> <u>제적 발전 정도, 인구감소로 인</u> <u>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</u> <u>여 지방우대의 근거가 되는 지</u> <u>수(이하 “지방우대지수”라 한</u> <u>다)를 마련할 수 있으며, 지방우</u> <u>대지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</u> <u>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한</u> <u>다.</u> <u>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</u> <u>따른 지방우대지수에 관한 중요</u> <u>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</u> <u>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</u> <u>며,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</u> <u>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</u> <u>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지방우대지수 등을 소관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733